


의정활동보고서



제271회 임시회(2014. 7. 8 ~ 7. 2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순간에
의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300만 도민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은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새로이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두된 국가개조를 완성하고 안으로는 서민생활
안정,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FTA 극복, 신도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환경 속에서 지역의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도의회 위상을 높이고, 도민과 동고동락하는 품격있고 강한 의회를 모토로 도민의 행복과 경북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와 함께 경북발전의 한축인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도민 공감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위해 배우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4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일할 여건과 환경 조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독립, 지방정부 권한 이양 등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23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60명 전 도의원이 개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개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8일

경상북도의회회장 장 대 진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1
III. 의안처리	17
IV. 민원처리	18
V. 본회의 보고사항	20
VI. 5분 자유발언	22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	22

부 록

□ 조례안(3건)	29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1회 임시회는 2014년 7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7월 22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21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7월 8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회 관련사항 보고(의회사무처장)에 이어서 임시의장인 한혜련 의원의 진행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고 의장 당선자인 장대진 의장의 진행으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장 선거에서는 안동 출신 장대진 의원이 당선 되었으며, 부의장에는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 포항출신 장경식 의원이 당선 되었다.

제10대 경북도의회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은 의회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선서와 장대진 의장의 개원사, 김관용 도지사과 이영우 교육감의 축사와 안전 행정부장관 축하 메시지 낭독과 자축연을 가졌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위원장 홍진규 의원·기획경제위원장 김희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장 황이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의원·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의원·교육위원회 이영식 의원이 당선되어 “당선인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조현일·배진석·김인중·이진락·안희영·박용선·김종영 의원) 선임인사” 등이 이어졌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김명호 의원의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시급”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비정상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한창화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태림 의원의 인사가 이어졌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등 새롭게 출범하는 경상북도의회 10대 의회 개원을 맞아 활기차고 역동적인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4년 7월 8일(화) 14:00

2. 회 기

가. 회 기 : 2014년 7월 8일 ~ 7월 22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4회(누계 4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21	2	3	3	3	4	3	2	1	0
누 계	21	2	3	3	3	4	3	2	1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8(화) 14:00 (제1차)	☐ 안전처리 ☐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의 건 ☐ 의장(장대진 의원) 당선 인사 ☐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 부의장(윤창욱 의원·장경식 의원) 당선 인사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7. 15(화) 11:00 (제2차)	☐ 안전처리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선 인사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인사	
7. 16(수) 11:00 (제3차)	☐ 안전처리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2(화) 11:00 (제4차)	☐ 5분 자유발언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 ☐ 안전처리 ☐ 경상북도 비정상적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인사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15(화) 14:00 (제1차)	☐ 안전 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6(수) 14:00 (제2차)	☐ 업무 보고 ☐ 의회사무처 ☐ 안전 및 조례안 심사 ☐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회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15(화) 13:00 (제1차)	☐ 안전 심사 ☐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7(목) 11:00 (제2차)	☐ 업무 보고 ☐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 안전 및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7. 18(금) 11:00 (제3차)	☐ 업무 보고 ☐ 대변인 ☐ 미래전략기획단 ☐ 일자리투자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15(화) 13:00 (제1차)	☐ 안전 심사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7(목) 11:00 (제2차)	☐ 업무 보고 ☐ 경북도립대학교 ☐ 감사관 ☐ 여성정책관	
7. 18(금) 11:00 (제3차)	☐ 업무 보고 ☐ 공무원교육원 ☐ 보건복지국 ☐ 안전행정국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15(화) 13:00 (제1차)	☐ 안전 심사 ○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7(목) 11:00 (제2차)	☐ 업무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 보건환경연구원	
7. 18(금) 10:30 (제3차)	☐ 업무 보고 ○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15(화) 13:00 (제1차)	☐ 안전 심사 ○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7(목) 11:00 (제2차)	☐ 업무 보고 ○ 농축산국 ○ 농업기술원	
7. 18(금) 10:30 (제3차)	☐ 업무 보고 ○ 동해안발전본부	
8. 18(월) 11:00 (제4차)	☐ 안전 심사 ○ 독도수호 결의안 ○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폐회중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15(화) 13:00 (제1차)	☐ 안전 심사 ○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7(목) 11:00 (제2차)	☐ 업무 보고 ○ 건설도시방재국	
7. 18(금) 11:00 (제3차)	☐ 업무 보고 ○ 도청이전추진본부 ○ 소방본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15(화) 13:00 (제1차)	☐ 안전 심사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8(금) 10:40 (제2차)	☐ 업무 보고 ○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2(화) 11:50 (제1차)	☐ 안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고
			계	가 결		부 폐			
				원 안	수 정				
계		16 (16)	14 (16)	14 (16)					2 (2)
조 례 안	소 계	3 (3)	3 (3)	3 (3)					
	의 회 제 안	1 (1)	1 (1)	1 (1)					
	도지사 제 출	2 (2)	2 (2)	2 (2)					
	교육감 제 출								
규 칙 안									
예산·결산		2 (2)							2 (2)
동의·승인									
건 의 안									
결 의 안		1 (1)	1 (1)	1 (1)					
기 타 안 (청원포함)		10 (10)	10 (10)	10 (10)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2)	1 (1)					1 (1)			
의 회 운 영										
기 경 획 제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 경										
농수산	1 (1)						1 (1)			
건 설 소 방	1 (1)	1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송	
계	2 (2)					2 (2)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1 (1)					1 (1)
건설소방	1 (1)					1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2건[조례안 2]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4. 7.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4. 7. 1)
"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조례안 22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 6.1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2014. 6.30 (제3538호)
"	"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39호)
"	"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 7. 7 (제3540호)
"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 (제3541호)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42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43호)
"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44호)
"	"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45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 4.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14. 4. 21 (제3520호)
"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1호)
"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2호)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3호)
"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	" (제3524호)
"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525호)
"	"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26호)
"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 (제3527호)
"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3528호)
"	"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제3529호)
"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30호)
"	"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31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4.17 (제3518호)
"	"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3519호)

VI. 5분 자유발언

□ 2014년 7월 2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시급>>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도내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경매 전(前)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가 시급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 안전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7월 현재, 전국 17개시도 중 9개시도, 즉 서울
특별시와 모든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경남 등지에서 15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6개도에서도 현장검사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전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에 있어서 경북도는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으로, 농도(農道)를 자처하는 경북도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경매 후(後) 유통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극소수 샘플에 대한 검사에 그침으로써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의 경매 후 농산물 검사실적은 구미 24건, 안동 12건에 불과하고, 포항은 수수료가 더 저렴한 민간 검사기관을 찾아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013년 기준 연간 반입물량 15만 2천톤 중 60톤, 즉 0.04%만이 형식적으로 검사되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주지하는 바,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안전’을 특별히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안전’사고의 빈발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목표문화(goal culture)를 달성하는 것은 수사학(修辭學)적

접근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과 문화수준, 그리고 실천의 문제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수도권에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경북에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차별과 불균형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위해성이 우려되는 타지의 농수산물이 도내 도매시장으로 무사 통과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수입 농수산물의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위해성이 우려되는 불량 농수산물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에 결정적인 학교급식의 안전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포항, 구미, 안동의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경매 전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면, 경북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

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깊은 관심으로 하루빨리 농수산물 현장
검사소가 설치·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3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7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미래전략기획단”을 “미래전략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① ~ ② (생략) 1. (생략) 2. 기획경제위원회 가. 대변인, <u>미래전략기획단</u> ,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농수산위원회 가. 농축산국, <u>동해안발전추진단</u> , 농업기술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6. ~ 7.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가. ----- <u>미래전략기획단</u> , 규제개혁추진단 ----- ----- ----- 3. ~ 4.(현행과 같음) 5. ----- 가. ----- <u>동해안발전본부</u> ----- ----- ----- 6. ~ 7.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7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이란 사회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의 개선으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활동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1.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목표 및 기본방향
2.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정책의 추진방법 또는 시행계획
3. 그 밖에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실천분야) 도지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분야로 정한다.

1. 사회적 약자 차별구조 개선, 서민경제 침해행위 근절 등
2. 불편부당한 민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등
3. 불합리한 규제 개선, 생활안전 경시관행 개선 등
4. 환경오염행위 근절, 기초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등
5. 그 밖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에 관한 사항

제2장 자문위원회

제 6 조(자문위원회)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정책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한 장기 및 단기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 8 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
장은 서민생활분과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자문위원회는 과제 발굴과 개선, 정책 추진 등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9 조(분과위원회) ①제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민생활분과위원회
2. 공공부문분과위원회
3. 규제·관행분과위원회
4. 법질서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각 분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 ①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제1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전체 위원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회의)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도지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장 보 칙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 도지사는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은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과 관련된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의견수렴 등) ①도지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7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여 성 정책관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 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 1항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민생경제 교 통 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79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시장·군수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시장·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6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 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 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 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시장·군수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 법」 제4조	
	28.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법 규칙 제8조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 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처리	같은 법 규칙 제20조제3항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 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 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 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 립·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3조제2항 (같은 법 제89조 준용) 같은 법 제94조	시장·군수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 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사업면허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마. 시설사용료 인가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설비의 시정 명령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 경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아. 개선명령 자. 사용명령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타. 상속신고수리 파. 휴업·폐업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4조 준용)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5조 준용)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준용)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시장·군수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처분 등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너. 청문	같은 법 제86조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부터 제6항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시장·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시장·군수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 대상 사업에 한함)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단서조항)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 합병 신고수리 아. 상속 신고수리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타. 차령연장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변경 명령 하. 청문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시설 적합여부 확인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제14조 제1항, 제3항 준용) 같은 법 제35조 (제15조제1항 준용)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사. 차량연장 아.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 정지 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카. 과태료부과·징수 43.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44. 정기점검기간 경과 사실통지 45.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46.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4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48.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 (수리) 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제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49.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 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 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 (공동검사 포함) 요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 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3 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 제2조의4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3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4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 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타.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 터 제3항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장·군수
에 너 지 산 업 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에너지 산업과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사업의 승계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 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신고의 수리 자. 위해방지조치의 명령 등 차. 보고·조사 등 카. 청문 타. 과태료부과·징수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 공급 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4.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5.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6.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7.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8.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제34조 「전기사업법」 제7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 조의7 「승강기시설안전관리 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 조제8항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시 행규칙 제27조의2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일 자 리 창 출 단	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필증 교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장·군수
기업노사 지 원 과	1.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위반사항 등에 대한 판매중지·개선· 수거·과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 이행 명령 권한 2.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 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출입·검사· 통지 및 질문 권한 3. 과태료의 부과·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1항 부터 제4항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제10호 부터 제14호, 같은 법 제41조제3항	시장·군수
국 제 비즈니스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군수
자 치 행 정 과	1.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제2항	시장·군수
세 정 과	1. 도 수입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인의 지정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다. 지정의 취소 라. 판매인의 승계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회 계 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군수
문 화 예 술 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 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농 업 정 책 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건)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FTA 농 식 품 유 통 과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2항 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군수
친 환 경 농 업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농 촌 개 발 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군수
축 산 경 영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 약사 등 변경신고 수리 4.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감독 5.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7.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8.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8조제1항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20조 동규칙 제20조제3항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축산법」 제11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58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수 산 진 흥 과	1. 보호수면의 관리 2. 육성수면의 관리 3.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수산업법」 제66조 같은 법 제69조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	시장·군수
환 경 정 책 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대기오염 경보발령·해제 및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 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 도 병행)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사업계획검토, 사 업계획 적합 및 사업계획 면제 대상 허가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변경허가(변경허가 여부 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제한, 허가 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시보관시설 승인(변경승인), 수집·운반증 발급(임시차량 사용 인정), 보관량 및 보관 기간 초과 승인(인정), 폐기물 재위탁 승인, 폐기물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의 제1항 제7호, 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 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7,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납부(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등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차수 시설 인정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의2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3항, 제7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및 권리자에 통보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제40조제8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66조 별표 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시장·군수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10.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관리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 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자. 금지행위의 단속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팔공산도립 공원구역은 제외)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시장·군수 (팔공산도 립공원구역 은 제외)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하. 대집행	같은 법 제31조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너. 허가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71조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7조의2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3조	
	버.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 제73조의2	
	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시장·군수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 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호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 인정	같은 법 제23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바. 과징금의 처분 등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 신고)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 인·점검 등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 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러. 청문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 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 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 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 리기준 인정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7호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제43조, 제45조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12. 경상북도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4.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 자의 준수사항 등 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 연료 제품 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 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 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바.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자. 과징금 부과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제82조의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10. 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나.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다.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라.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마.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바. 유독물영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아.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자. 보고·자료 제출 명령 또는 출입 검사 등 연차보고서의 제출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청문의 실시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제2항, 제3항제1호 부터 제8호의2, 제4항제1호의2, 제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3호, 제14호 같은 법 제45조의2 같은 법 제4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6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경 안전과	11.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 집행 12.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 의 경작 권고 13.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14.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15.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16. 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 방법 권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5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9조제1항, 제2항	시장·군수
물산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 장을 포함)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 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 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시장·군수
산림 녹지과	1. 영림기술자 배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직원의 배치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 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산 립 녹 지 과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나.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읍·면, 군지역) 관리청 7.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제2항 「산지관리법」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 립 녹 지 과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사. 복구의 대집행 등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 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 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시장·군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다문화행복과 보건정책과 공통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 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 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 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보 건 정 책 과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식품 의약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9. 마약류의 사고보고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약사법」 제31조제5항 「약사법」 제45조제1항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제103조 「약사법」 부칙 제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9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2항	시장·군수
도시 계획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 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보 고 지시 및 검사(상기 가호 부터 사호에 관한 다음 권한)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 카.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의 산업 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 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 업 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0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배치된 주요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시장·군수 시장·군수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3.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함)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에 한함) 라. 도서관 마. 주차장 바. 궤도 사. 시장 아. 공공청사 자. 수도공급설비 차. 하수도 카. 도축장 타. 방풍설비 파. 사방설비 하. 방화설비 거. 방조설비 너. 연구시설 더. 문화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러. 사회복지시설 머. 공공직업훈련시설 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서. 광장(단, 교통광장은 중로 이 하의 도로와 도시지역외의 지 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 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함) 어.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저. 공공공지 처.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커. 전기공급시설 터. 장례식장 퍼. 저수지 허. 가스공급설비 고. 방수설비 노. 유수지 도. 폐차장 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모. 청소년수련시설 보. 공동묘지 소. 화장시설 오. 봉안시설 조.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코. 자동차정류장 토. 열공급설비 포. 방송·통신시설 호. 공동구 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누. 자연장지 두. 종합의료시설 루. 수질오염방지시설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의 변경결정 및 고시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 면의 승인 및 고시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포함)·고시·협 의권 및 서류의 공람 9.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도 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10.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 한 변경 및 고시 11.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12.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92조 같은 법 제98조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제11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13.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	시장·군수
	14.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1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16.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1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50조	
	1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 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20.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2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2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2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 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2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5.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27.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28.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 3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3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시장·군수
도 로 철 도 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 제외) 2. 권한의 위임·위탁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4. 공익을 위한 처분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7. 지방도상 점도구역의 지정 등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 등 10.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11.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도로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부터 제43조 도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도로법 제83조 도로법 제84조 도로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49조제4항 도로법 제51조 도로법 제23조 도로법 제90조 도로법 제4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로 철 도 과	12. 건설기계 등록 등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4. 등록의 말소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나.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다.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라. 보상청약, 협의, 계약체결, 지급 등 마.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바.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18. 지방도의 미불용지의 평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3조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2, 제6조, 제8조,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도로법」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부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6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20. 건설기계 구조변경 21. 등록번호표 반납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 금지 및 새김명령 등 23. 건설기계의 폐기 24.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대장 비치 2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및 면허증 반납 2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27.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28.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29. 원인자 부담금 30. 수수료의 징수 31. 과오납금 반환 32. 변상금의 징수 33.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제25조의 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44조 「도로법」 제64조 「도로법」 제76조 「도로법」 제89조 「도로법」 제91조 「도로법」 제94조 「도로법」 제101조제2항, 제3항	시장·군수
건 축 디자인과	1.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제16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건축 디자인과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 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 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 에 관한 허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제1호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	시장·군수
치수 방재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 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단,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 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 1항 제4호의 공작물중 교량(세 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제 외) 및 고시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포함) 및 감면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치 수 방 재 과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 명령 권한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 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청원 경찰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시장·군수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에너지산업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 명령, 시설 등의 봉인 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 카.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타. 청문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에너지 산업과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 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 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 철거명령 및 대집행 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 음의 권한(다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8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에너지 산업과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자. 완성검사 차. 임시사용 허가 카. 용기 등의 검사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파. 위해 방지조치 등 하. 청문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 리점 및 부생 연료유판매소 제 외)에 관한 사무중 석유판매 업 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의 공표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제15조제7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5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7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투자 유치단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관 광 진흥과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 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 측량 실시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 의 토지 매입 승인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체 육 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바. 시정명령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체 육 진흥과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자. 청문 실시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정책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1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안전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 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 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 한 조업 정지 명령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명령 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제1 항제1호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9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 경 안전과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카.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 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 매금지 명령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 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 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 증명서 발급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 고 수리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제63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 법 제44조제7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제45조제4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전과	마.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 바. 청문 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 나. 청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8. 유독물관리자 과정 및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9.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나.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다.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라.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마.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바.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호, 제5호,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제13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제7호·제13호·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9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전과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청문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2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보 건 정책과	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의료보수의 신고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식 품 의약과	1.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 파. 허가 등의 제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식 품 의약과	하. 출입·검사와 수거 거. 폐기 명령 등 너. 업무보고 등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러. 청문 머. 과징금 처분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 다. 보고 지시와 검사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마. 폐기 명령 등 바. 검사명령 사. 개수명령 아.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자. 청문 차. 약사감시원 등 임명 카. 허가증 갱신 타. 과징금 부과·징수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제1항 부터 제3항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도 시 계획과	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의 승인 및 고시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 권한 및 서류의 공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획과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 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 완료 공고와 협의권한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고시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협의권 자. 선수금 승인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 을 권한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타. 청산금의 정수위탁 수행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요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 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9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부터 제3항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제3항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8조 제1·3·4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획과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어. 청문 실시 5.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중 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이 준공인가 및 준공검사 를 위한 검사 의뢰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보완 시공 등 조치명령 아.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 시 및 검사(상기 가호부터 사호에 관한 다음권한)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 6. 기초조사의 실시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8.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의 지정 및 고시 9.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 허가, 원상회복명령	같은 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제7조 의4 같은 법 제1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0.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11.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 지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 시첨단산업단지의 해제, 전환 및 고시 12.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 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 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4.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의제 및 준공인가 15. 산업단지내 토지에의 출입 등 16.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7. 산업단지내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8.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19.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검사 등 20.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승인의 취소, 중지 처분 등 21.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승인 2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 지의 관리 23.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 임·위탁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 기 법원 통보 24.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고시 25.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7조의2,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 제13 조의2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같은 법 제19조의2, 제21조, 제3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5조제1항· 제3항·제5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지방도에 한함.)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함.) 가.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다.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부지 점용 양도신고 나.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라.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면제 승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57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도로법」 제4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3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건 축 디자인과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승인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협의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라. 주택의 감리 등 마.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의3 같은 법 제2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토 지 정 보 과	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나. 지정공부의 반출 승인 다. 지정공부의 복구 라. 도면의 재작성 승인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바. 축척변경의 승인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자.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